

운영 · 홍보위원회 회의자료

자료제공 : 한국주택협회

이 자료는 지난 6월 13일 개최한 우리협회 운영 · 홍보위원회 회의시 보고한 내용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법령 제도등 개정건의 추진사항

가.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정책 종합건의(5.24)

- 건의처 :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
- 건의내용

1)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한 정책건의

가) 중산층의 수요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시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구입하여 5년이내 매각시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등록세 한시적 감면

전용면적 60~85m²이하의 주택을 2002년 말까지 분양 또는 구입 계약한 경우 취득사기에 관계없이 50% 감면

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기간 연장

- ▶ '00.5.25일 건교부(주택정책과)에 별도 건의

국민주택건설용지용으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 세액 감면

⇒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 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구분	현행	건의
공공임대 (60m ² 이하)	-호당 2,500만원 -연리 4.0%	-호당 3,000만원 -연리 3.0%
중형임대 (60~85m ² 이하)	-호당 3~5천만원 -연리 5.5%	-호당 4~6천만원 -연리 4.0%
중도금 (60m ² 이하)	-호당 600만원 -연리 4.0%	-호당 800만원 -연리 3.0%

- 임대기간에 따른 기금지원 차등화 : 임대기간이 길수록 기금 지원액을 증가시키고 금리의 하향조정을 통하여 임대주택의 재고 축적

○ 국세 및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구분	현행	건의
취득세	- 60m ² 이하 : 면제	
등록세	- 60~85m ² 이하 : 25%감면	- 60~85m ² 이하 : 50%감면

구 분	현 행	건 의
재산세	- 40㎡이하 영구임대 : 면제 - 85㎡이하 : 50% 감면	- 모든 임대주택 : 50%감면
종합 토지세	- 40㎡이하 영구임대 : 면제 - 85㎡이하 : 0.3%분리과세	- 모든 임대주택 : 분리과세
양도 소득세	- 85㎡이하 국민주택 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 면제	- 모든 임대주택은 5 년이상 임대후 양도 하는 경우 : 면제

2)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가) 공사비등을 포함한 비용부과 근거 마련 및 공사비 분납제 도입

조합원의 공사비 부담시 가청산규정을 준용하였으나, '95.12.29 법개정으로 가청산규정이 삭제되어 일부조합원이 공사비 부담에 따른 소송제기 등 민원 야기

⇒ 경비를 비용으로 용어 정비하여 공사비등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공사비 분납제를 도입하고 비용부담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비례한 청산이 아닌 공사비등 사업비를 감안한 사업수익에 종전토지등의 출자가액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차액을 부담한 비용을 정산토록 법제화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동의율 상향 조정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 재건축사업과 같이 토지등의 소유자 동의율을 5분의 4이상 상향조정하여 조합원간 원만한 합의유도로 원활한 사업추진

다) 재개발사업기금 적립 확충 및 조합원에게 용자 지원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각각 30%, 지자체귀속분 개발부담금 50%,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10%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

⇒ 국유지 매각대금 50%, 공유지 매각대금 및 지자체귀속분 개발부담금 전액,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30%이상을 적립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조합원의 분양금 납부를 위한 용자 지원(년리 5%, 20년 분할상환) 등에 활용

3)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00.5.16일 건교부(주택정책과)에 별도 건의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자격요건 완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경과후 매각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
⇒ 임차인 자격 제한 폐지

나)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방법 개선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하인 임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동안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비의 1만분의 3 매월 적립
⇒ 5년이하 민간건설임대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폐지

4) 주택건설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계획법규 제도 개선 건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관련 '00.5.4일 건교부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에 별도 건의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높이제한 완화
○ 12층을 15층으로

나)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상향조정
○ 제2종 : 150~250% \Rightarrow 150~300%
○ 제3종 : 200~300% \Rightarrow 200~350%

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경과규정 특례조치
○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년간 유예조치
○ 조합주택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관련
'00.5.22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별도 건의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상향조정 및
높이제한 완화
○ 200%, 10층 \Rightarrow 250%, 15층

나)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
완화
○ 용도용적제 적용 \Rightarrow 삭제

도시계획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관련
'00. 5.18일 건교부(도시정책과)에 별도 건의

가) 공원 등의 설치기준 완화
○ 주택개발시 개발사업구역의 10% 이상을 공
원으로 지정
 \Rightarrow 삭제

*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시에는 15~
20% 정도의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있고, 주택

건설사업시에도 30%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음

5)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건의

▶ '00.5.15일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
위원회)에 별도 건의

가) 부담금 납부기한 완화

○ 분양공급계약 체결시까지
 \Rightarrow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부담금 납부확인 및 계약 거부

○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시 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및 미납시 계약 거부 가능
 \Rightarrow 삭제

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건의

▶ '00.5.22일 건교부(주거환경과)에 별도
건의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요건 강화

○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함
 \Rightarrow 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결정시 “주촉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일반건설업면허를 소지
한 자중 직접 시공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
으로 공급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나) 공동주택용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지를 선수 공급하는
경우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음
 \Rightarrow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공급계
약체결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도
록 조치

7) 대한주택보증(주) 규정등 제도개선 건의
▶ '00.5.19일 건교부(주택관리과), 대한주택보증(주)에 별도 건의

가) 출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건의
○ 보증회사 전환이전에 주택공제조합에서 '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와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에 질의 회신을 통하여 조합원의 재무구조 악화 방지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감자당한 주택업체들은 '99년도 결산시에 순재산액의 감소를 장부가액에 당기 손실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 '98.12.11 「기업회계기준」 중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일부 회계법인에서 금년도 결산시에 조합출자금의 순재산액 감소분을 당기 손실로 회계처리토록 요구하고 있음

⇒ 보증회사에서 조직 전환시에 이와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에 질의 회신하였던 바와 같이 질의 회신을 통한 회계처리기준 명확화 조치 요망

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6.2)

- 건의처 : 건교부(도시관리과)
- 건의내용

1)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범위 확대 및 면적규모 축소

- 지역범위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면적규모(도시계획구역밖) : 33만m²이상
⇒ 20만m²이상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

- 구역지정고시일부터 1년이내
⇒ 1년 6월이내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구역지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 도시개발구역 제안자가 구역지정 제안의 처리결과 또는 구역지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

4) 민간법인 등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완화

○ 선수금 : 공사진척율 10%이상
⇒ 공사착공계 제출로 갈음
○ 보증서등의 종료일 : 준공예정일부터 30일 이상 ⇒ 준공예정일 까지

5) 조성토지 등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요건 완화
조성토지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전에 미리 취득하도록 한 단서 조항 <삭제>

6)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범위 확대

○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1/3이하
⇒ 1/2이상
○ 행정청이외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매입비 : 추가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한 건의(6.5)

- 건의처 :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 신용보증기금

- 건의내용

-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정부·금융기관 등의 추가 출연금 지원 요청

추진중인 주요업무

가. 국토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주택업계 건의(6.15)

- ▣ 건의처 : 건교부(국토정책과, 주택정책과)
- ▣ 건의내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수도권지역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 분양성있는 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확대
 - 기지구지정되어 개발중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발계획승인 토지수용 및 보상, 공급승인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히 공급
- 민간부문 택지개발 및 공급 활성화 지원
 - 민간주택사업자도 단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자로 지정(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개정)
 - ▶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 다양한 경영·마케팅능력,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 구축 필요
 - 민관합동법인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적극 추진
 - ▶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토공·주공)와 민간건설업체의 민관합동법인 설립 지원 → 출자금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
 - 기존 준농림지역에 '단독' 개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접개발 허용
 - ▶ '단독' 개발된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써 기반 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단위규모 개발 허용
 - 주택공급 및 난개발문제 해소를 위해 쾌적한

신도시 개발 추진

- 환경시범도시로 개발 가능한 판교·하남 등 조기 개발
-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적극 참여 지원(도시개발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 ▶ 도시계획구역밖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규모 축소(안 제5조제1항) : 33만m² 이상 20만m² 이상
 - ▶ 민간법인 등이 시행자인 경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완화(안 제50조제1항) : 공사진척률 10% 이상 → 공사착공 계 제출로 갈음
 - ▶ 조성토지 등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요건 완화(안 제67조제1항) : 조성토지 등에 포함된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전에 미리 취득하도록 한 단서조항 → < 삭제 >
 - 지자체에서 개발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원활화 지원
 - ▶ 용도지역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개발요건 등 기준 마련
- 도시개발 압력이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지역 시·군의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조기 수립
- 사전심의기구인 중앙 지방심의기구의 심의절차 간소화 및 중복심의 배제
 - 심의기구 운영방법 : 필요시 수시 개최
 - 절차 간소화 : 사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 도시계획, 교통환경 등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일시에 심의처리
- 중복심의 배제 : 심의대상사업 기준 결정시 중복적으로 심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사전 조정

주택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손실 최소화 방안

- 주택업체가 준농림지역내에 기획보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2000.8월까지 사업승인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00.8월) 시 종전규정 적용토록 조치
 - 시·군종합계획 수립시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지역은 새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개발 대상지(주거지역)로 구분 조치
 - 주택업체 보유토지중 사업추진 곤란 등으로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으로 매입 조치
 - 정부의 토지 비축 확대
 -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업계 지원방안 강구
 - 매각처분 곤란, 사업추진 애로 등의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는 판정유예기간 연장
 - 2000. 8월부터 2003년 상반기(시·군종합계획 수립시)까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 강구
 - 건설업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
 - 신용대출에 기초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긴급 운전자금 등 장기저리 지원 확대
 - 특정 Project의 공사이행을 담보로 하고 발 주액을 한도로 하여 국채를 발행, 건설업체에 채권을 대여해 주는 자금조달방안 강구
 - ▶ 건설업체는 채권을 할인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만기시에 상환

나. 최근 각종규제 강화 조치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6.15)

□ 건의처 : 건교부(주택정책과)

□ 건의내용

1) 난개발 방지대책과 파급영향

-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 “국토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주택업계 전의”와 동일
-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 제한 규제
 - 지속적인 주택의 건설·공급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위하여는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상향조정(250%)
 - 용적율과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건물높이 제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제한 강화
 - 주택실수요자의 대기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시·군의 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 조기 확정 및 택지개발 가능지 조기 개발
 - 우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확정전이라도 계획수립방향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주택사업 허용
 - 가용택지 확보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가능한 판교·하남지역 등 조기 개발
- 경기도사무위임규칙 개정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주택건설사업시 기반시설 분담금 부과
 -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 분담금 부과 폐지

2) 주택건설사업시 10%이상의 공원 설치

- 주택건설사업시에는 녹지등 조경시설은 주

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서는 관련조항 삭제

- 3) 학교용지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부담금 징수
-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에 공급하는 경우 시·도의 부담분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조치
 -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정수되는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조달토록 의무화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 교육세 세율 조정 및 정부재정 지원을 통하여 소요재원 마련

- 4)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등 감면기간 금년말 완료
- 주택경기의 침체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 및 주택난이 우려되므로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2002.12.31까지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

다.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건의 추진

□ 건의처 : 재경부(국유재산과), 건교부(주거환경과)

□ 건의내용

- 1)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국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를 인하
- 사업인가당시 점유 사용자로부터 그 권리의 무를 승계한 자 (사업인가당시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동일조건 적용)
 - 5년, 연 8퍼센트 \Rightarrow 15년, 연 5퍼센트
 -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분부터 적용(부칙 경과조치 마련)

2)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국유재산 주거용점유자에 대한 대우로 또는 사용요율 인하

-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Rightarrow 1000분의 15

3)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연체요율 인하

- 연 15퍼센트 \Rightarrow 연 10퍼센트
- ※ 입법예고기간 : '00.6.1~6.20(협회 개선건의서 마련중) 

용어설명

- ◇ **준농립지역** : 농업진흥지역과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 구성돼 농립업의 전통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 ◇ **농립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 임지 등으로 농립업의 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 **도시지역**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했거나 개발할 지역.
- ◇ **준도시지역** : 도시계획에 준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 국민 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